

韓國圖書館史研究抄 (六)

朴熙永

目 次

第四章 李氏朝鮮王朝時代

第一期 太祖—世宗(1292—1450)

第一節 機關斗施設

- 1) 校書監, 校書館, 書籍監
- 2) 書籍院, 書籍監
- 3) 集賢殿, 寶文閣
- 4) 承文院
- 5) 璞源殿
- 6) 讀書堂

7) 造紙所

8) 鑄字所

9) 春秋館

10) 正音廳

第二節 製紙

1) 造紙所

2) 佛經紙, 寫經紙, 印經紙

第四節 鑄字所

第四章 李氏朝鮮王朝時代

李氏朝鮮王朝時代^{이조} 혹은 王氏高麗末期의 臣이었던 李成桂가 高麗에 代하되 建國한 王朝로서 1392년 7월 17일부터 1910년 8월 17일 韓國이 日本에併合하기 까지의 519년間을 말한다. 李氏朝鮮王朝時代(以下 이를 略하여 李朝라고 하겠다)를 몇 國史圖書를 參考하전에 二期乃至 六期로 나누어서 編하고 있다. 本圖書館史를 續述함에 있어 資料의 分量을 考慮하여 이를 六期로 나누어 考察하여 達하겠다.

第一期

第一期는 太祖부터 世宗까지의 約 60年間을 計하였다.

第一期는 李朝時代의 政治, 文化 制度等 모든面에서 確固한 基礎가樹立된 時期로서 高麗의 文化를 그대로 繼承하였기 때문에 太祖朝에 이미 發展하였으니 世宗朝에 이르러서는 文化가 極盛하여 全李朝

時代에서도 가장 文化가 發達하였던 時期이다.

李朝初期의 文學을 볼때 文學中에서 國文學의 創造와 發展은 特記할 일이라고 하겠다. 世宗26年(1446)에는 우리나라 固有한 文字인 한글(訓民正音)이 創造되어 우리의 말을 固有한 科學的인 文字로 表現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참다운 國文學이 發生하였고 發生한 國文學은 民衆化되어 時調가 이루어 지는 等 우리나라 國文學史上 大端히 重要하고 또한 뛰벗한 著績이 이루어진 것이다.

訓民正音이 制定되기 以前 漢文字를 借用하던 때에는 우리 말을 表記함에 있어 漢文字로 만드려진 吏讀가 있었던 것이다. 吏讀는 新羅의 薛聰이 創造하였다는 說이 있다. 創造者에 對하여는 說이 匱區하거나와 如何間 吏讀로서 鄉歌가創作되었고 吏讀는 公用文等에도 使用되고 있었다. 訓民正音이 頒布된 以後에도 如前 히

公用文等에 漢文과 吏文이 使用되었다. 그러나 正音으로 內外典籍이 翻譯되어 諺解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졌고 口訣이 나오게 되었다.

李朝初의 漢文學은 高麗時代에서와 같아 文學이라면 漢文學以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國文學이 發生하기는 하였으나 固陋한 漢學者들의 賤視을 받아 發達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甚至於는 正音까지도甚한 反對를 받았던 것이다. 이는 곳 事大觀念의 徹底한 傳統力에 依한 것이다. 그러므로 文學이라고 하면 곳 이것은 漢文學이었던 것이다.當時의 漢文學者로는 鄭道傳, 卜秀良, 檻近, 尹淮, 金泮, 南秀文, 成三問, 魚曼甲, 朴彭年, 鄭麟趾, 申叔舟, 李奮, 鄭摠, 河峴等이 豐出하여 經學과 詩文을 發展케 하였던 것이다.

李朝初期의 史學은 正史에 있어서 宮廷을 中心으로 한 事件의 記錄과 歷代王의 教交, 廷臣의 上奏, 議論, 外交文書, 外官邊臣의 報告等까지 仔細하게 記錄되어 있는 李朝史研究의 基本史料가 되는 所謂 朝鮮王朝實錄(李朝實錄)이 春秋館에 屬한 史官들에 依하여 記錄된 史草를 材料로 實錄이 編纂되었다. 太宗 13年(1413)太祖 實錄 15卷이 이루어 졌고, 世宗 8年(1426)定宗 實錄 6卷이 이루어 졌고, 世宗 13年(1431)太宗 實錄 36卷이 이루어 졌다. 이時期에 高麗史가 이루어 졌는데 太祖 4年(1395)鄭道傳等이 高麗史를 撰進한以後부터 雜校되었다. 世宗朝에 이르러 王은 鄭麟趾等 30餘名에 命하여 高麗史를 編纂하게 하였는데 完成은 世宗이 升遐한 年文宗 1年(1451)에 139卷이 이루었다. 現今 延世大學校에서 影印하여 3冊으로 發行하고 있는 高麗史가 그것이

다. 史學家로는 檻近 李奮, 河峴等이 東國史略을 撰輯하였고 鄭道傳이 高麗史를 도찬 尹淮이 高麗史를 撰輯하였다.

李朝初期의 儒學을 볼 때 太祖와 太宗은 本是 热心히 佛教를 밀었으나 高麗時代에 있어서의 佛教로 因한 極甚한 弊端을 目擊하였으므로 해서 儒教主義에 立脚한 中國三代를 理想으로 하는 政治를 目的하였다. 그리하여 朱子學을 科舉의 正科目으로 하였으며 더욱이 武科에까지 併試하게 하였으니 儒學은 盛하여 世宗朝에는 極致에 이르러 王自身이 每日 經筵에 儒書講說을 듣고 成均館과 각地方 州縣의 鄉校에 孔子廟를 세워 嘉獎하였다. 永樂의 性理大全을 비롯하여 道鑑訓義, 綱目訓義等을 普及하였다. 有名한 儒學者로는 金叔濬, 金泮, 金鉤, 金末等이 있었다.

李朝初의 佛教를 본다면 燐爛하였던 高麗의 政治와 文化는 佛教를 中心으로 한 것이 있으나 李朝에 드러서서 太祖, 太宗朝에는 各儒臣의 佛教를 反對하는 생각은 政策에 反映되어 많은 抑壓을 加하였으며 世宗朝에는 佛寺를 殕撤하고 僧徒를 賤人으로 待遇하고 僧侶의 都城內에 留하는 것 까지 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反面 信仰方面에서 이를 본다면 王室의 後宮에서 까지 佛事를 舊爲하였고 儒學者中에서도 佛教에 깊은 智識과 關心이 있는 사람에게서 佛典의 刊行等도 流行하였다.

李朝初에는 이밖에 여러 學問이 大成하였는데 法律學에는 崔致雲, 音樂에는 成倪, 天文學에는 金淡, 算數學에는 金鑑이 있었고 世宗朝에는 여려 發明品이 나왔던 것이다.

第1節 機關과施設

1) 校書監, 校書館, 書籍監

校書監은 經籍의 印刷, 頒布 및 祝印
銘를 任務로 한 中央官署로서 太祖元年
(1392) 7月28日太祖가 建國과 同時に 官
制를 制定하였을 때 高麗朝의 典校寺(內
書省, 秘書省, 秘書監, 典校署 典
校寺等으로 改稱하였다)라는 機關을 模倣
하여 設置한 것으로서 設立當時의 官員은

判事	二員
監	二員
少監	一員
丞	一員
郎	二員
著作郎	二員
校勘	二員
正字	二員

이 있었다.

② 校書監은 太宗元年(1401)7月13日 그 名
稱을 校書館으로 改稱하게 되었고 電名을
改稱한 校書館의 官員은

提調	二員 (一員은 大提學이 兼)
判校	一員 (他官이 兼)
校理	一員
別坐	一員
別提	二員
博士	二員
著作	二員
正字	二員
副正字	二員

이 있었다.

④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校書館
條에 보면 校書監이 校書館으로 改稱하기
까지 사이에 書籍監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書籍監이 校書館條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書籍監은 高麗時代의 書籍院
과 같은 書籍의 印刷를 管掌한 機關이라
고 보겠다. 同資料에 보면 高麗朝의 校書
館인 內書省은 經籍을 掌하였다고 있고

李朝朝의 校書監은 經籍의 印頒을 掌하였
다고 있는바 李朝初의 校書監에서는 高麗
朝와 같이 單只經籍을 掌하였으나 經籍의
印刷事業은 書籍院에서 管掌하였다던 것인
다. 그러므로 書籍監은 다음項의 書籍院
이 改稱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書籍監의
官員은

令	一員
丞	二員
錄事	二員

이 있었다.

太宗3年(1403)2月13日 鑄字所가 設置되
어서 書籍의 鑄字印刷事業이 本格化하였
는데 世宗은 鑄字印刷事業에 至大社開
을 갖어 世宗17年(1435)9月12일에는 鑄字
所를 景福宮內에 移轉하여 直接隨時로 監
督하였는데 前의 鑄字所로 使用하던 곳에
는 木板을 두고 이를 校書館으로 하여 琅
掌하게 하고 여기에 提調를 두었다고 하
는바 校書館은 鑄字所와 더불어 印刷와 頒
布事業을 管掌하는 官署로서 한때는 校書
館은 木板印刷을 掌하고 鑄字所는 活字印
刷를 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太祖實錄 卷1 太祖元年7月丁未條

②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 校書館條

③ 太宗實錄 卷2 太宗元年7月庚子條

④ 增補文獻備考 卷220 職官考 7 校書館條

⑤ " " " " "

⑥ 太宗實錄 卷5 太宗3年2月庚申條

⑦ 世宗實錄 卷69 世宗17年9月壬午條

2) 書籍院, 書籍監

太祖元年7月28日 李太祖가 建國과 同時に
제정한 官制에 書籍院이라는 機關을 中央
에 두었는데 書籍院에서는 經籍의 印出을
掌하였다고 있다.

高麗朝 恭讓王4年(1392)에 鑄字로 印刷
하는 業務를 管掌하는 國家機關으로 書籍

院이 있었는데 李朝朝로 드러와서 第3代 太宗3年(1403)2月13日 活字印刷業務를 管掌하는 機關인 鑄字所가 設置할 때 까지 鑄字所의 前身이라고도 할 수 있는 書籍院이라는 機關을 高麗의 官制를 模倣하여 두었던 것이다.

李朝初 書籍에 關係되는 機關으로 校書監과 書籍院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前項 校書館에서 詳述한 바 있는 書籍監은 書籍院의 改稱으로 생각할 수 있으리 書籍院, 校書監 이렇게 院, 監의 다른 文字를 使用하고 있음을 是正同一한 監이란 名稱으로 하기 為하여 書籍院을 書籍監이라고 改稱하여 校書監, 書籍監 이렇게 稱하였다 것이 아닌가 한다.

書籍院에서는 太祖4年(1395)에 白州知事徐贊所造刻字로서 大明律直解 百餘本을 木活字로 印出하였고 太祖6年(1397)에는 開國原從功臣錄券을 西시 木活字로 印出하였다. 高麗恭讓王4年(1392)에 設置된 書籍院은 鑄字와 印刷를 主掌하는 것으로 設置하였으나 高麗는 그当年에 亡하고 세로히 李朝가 建國하였으므로 李朝初의 書籍院은 王朝變動期에 鑄字事業에着手할 餘裕가 없어 木活字로 印하였다 것이다 (参考: 韓國史辭典 251P)

① 太祖實錄 卷1 太祖元年7月丁未條

② 高麗史節要 卷35 恭讓王4年1月條

③ 太祖實錄 卷5 太宗3年2月庚申條

3) 集賢殿, 寶文閣

集賢殿은 高麗時代부터 있었던 殿으로서 蔽集 保管되었던 많은 書籍을 둘여 받은 것이다. 王朝에 따라 集賢殿의 用途가 다른 때로 있었으나 主로 文臣들이 이 集賢殿에 모여서 保管되어 있는 많은 書籍을 읽고 經義를 論하고 顧問에 對備하였다 것이다.

李朝時代에 드러나서는 集賢殿을 經筵의 일을 하다가 定宗元年(1399)에는 集賢殿을 文臣의 更日 會講하는 곳으로 하다가 定宗2年(1400)1月10日 集賢殿을 寶文閣이라 改稱하였는데 如前히 經筵의 일을 한 寶文閣은 一時 閉鎖하였다가 世宗11年(1429)4月27日 修文殿과 더불어 復置하게 되었다.

世宗2年(1420) 集賢殿은 弘文館의 인存在로서 宮中에 設置되었으며 古今의 經籍을 蔽集하여 才德있는 文學者들을 選擇하여 討論하게 하고 顧問에 對備하여 進講과 顧問에 하였던 것이니 集賢殿은 宮中에 있었던 書籍을 蔽集하여 保管하면 곳이다.

集賢殿의 官員은

領殿事 二員 (他官이 兼)

大提學 二員 (他官이 兼)

提學 二員 (他官이 兼)

副提學

直提學

直殿

應敎

校理

修撰

副修撰

博士

著作郎

正字

이 있었다.

十人 (經筵이 兼)

後에 增員되어 世宗8年(1426)에 60人을 增置하였고 7年? 세도 16人을 增置하였다가 世宗18年(1436)에는 27人으로 減하였다고 한다.

⑥ 集賢殿의 藏書가 많이 增加하였던 모양으로 世宗은 世宗10年(1428)8月7일 集賢殿의 藏書閣을 新築하도록 勸하고 있다. 또한 集賢殿의 所藏되어 있는 書籍에는

每卷에 經筵이라는 두 文字를 標著하였다.^⑧
世宗期에는 이 集賢殿은 마치 學術院
即 Academy와 같은 機關으로서 世宗은
集賢殿에 여러 才德의 學者들을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여러가지 研究를 하였는데
集賢殿에서 이루한 諸事業과 葉蹟中에서
特記한 事件이 많으나 特히 한글의 研究
完成과 書籍의 編纂事業은 大端히 偉大한
業蹟이라고 하겠다. 世宗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書籍을 集賢殿에 命하여 撰하게
하였으며 集賢殿以外에서 刊行한 書籍과
進呈 書籍을 반듯이 集賢殿에 下賜하였던
것이다.

- ① 增補文獻備考 卷220 敦官考7 經筵廳條
- ② 定宗實錄 卷3 定宗2年正月乙亥條
- ③ 世宗實錄 卷4 世宗11年4月壬寅條
- ④ 增補文獻備考 卷221 敦官考8 弘文館條
- ⑤ " " " "
- ⑥ " " " "
- ⑦ 世宗實錄 卷41 世宗10年8月丙戌條
- ⑧ 世宗實錄 卷44 世宗11年3月壬申條

4) 承文院

承文院은 古文書의 應奉司로서 諸詔勅
과 事大交隣의 文書를 藏하였던 機關이
다. 承文院은 圖書와는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곳은 아니나 文書를 保管하였던 곳
으로서 文書館이라고 하겠다.

承文院의 應舍는 宮外에 있었으나 世宗
25年(1443)5月3日 承文院提調인 刑曹判書
^① 安崇善이 文書의 保管이란 大端히 重要한
일이므로 應舍를 宮中으로 移轉하기를 上
疏하여 宮中으로 移轉하게 되었다.

- ① 世宗實錄 卷100 世宗25年5月丁巳條

5) 璞源殿

世宗16年(1434)8月5日 先世相傳의 文書
를 璞源殿에 藏하였다고 하는바 璞源殿은
李氏王家相傳의 特殊한 記錄類를 別途로

保藏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① 世宗實錄 卷65 世宗16年8月己酉條

6) 讀書堂

增補文獻備考 卷221 敦官考8 讀書堂
條에 보면 讀書堂은 世宗8年(1426)에 設置된 것으로 文臣中에서 年少하고 才行이
있는 著를 選하여서 오랜 暇를 賦하여 交代로 讀書堂에 入直해서 書籍講讀에 專意
케 할것을 命하였다고 있는바 讀書堂과
集賢殿은 程度와 目적이 다른기는 하나
研究機關인 同時に 讀書機關이었던 것이다.

7) 造紙所

- 第2節 製紙에서 詳述함

8) 鑄字所

- 第3節 鑄字所에서 詳述함

9) 春秋館

- 第4節 實錄에서 詳述함

10) 正音廳

- 第9節 正音에서 詳述함

第2節 製紙

1) 造紙所

造紙所는 文字 그대로 종이(紙)를 製造
하는 官署로서 太宗15年(1415)7月25日 처
음으로 中央政府의 機關으로 設置되었다.
造紙所의 官員은

提調 二員

司紙 一員

別提 四員

이 있었다.

종이의 需用量의 甚한 增加로 因하여
造紙所의 業務가 奔走하여 了으로 世宗
13年(1431)4月1日 造紙所에 따로 허

別坐 一員

을 더 設하고 鑄字所書員을 加設하여 造

紙所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造纸所가 設立된當時에는 表箋文紙와 그밖에 여의種의 종이를 造纸하였는데 世宗32年(1450)閏正月20일에는 印經紙도 造纸所에서 監造토록 하였다.

世宗第에 造纸所에서 造纸된 것으로는 竹葉, 杉木, 蒜節, 蒲節의 四色冊紙가 있었으며 이밖에도 藥精紙, 柳葉紙, 柳木紙, 意苡紙, 倭紙等의 紙類가 造纸되었는데 모다 紙質이 좋았으며 書籍을 印하기에 좋았다고 한다.

- ① 太宗實錄 卷30 太宗15年7月庚申條
- ② 增補文獻備考 卷223 職官考10 造纸署條
- ③ 世宗實錄 卷52 世宗13年4月乙未條
- ④ " 卷127 世宗32年閏正月乙丑條
- ⑤ " 世宗6年8月甲辰條
- ⑥ 增補文獻備考 卷223 職官考10 造纸署條
- ⑦ " " " " "

2) 佛經紙, 寫經紙, 印經紙

高麗末元으로부터 朱子學이 傳來한 後부터는 儒學이 發展하였으며 太祖는 儒教를 佛教에 대하는 政治社會와 思想統制의 指導理念으로하고 國民生活의 規範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佛經以外의 書籍을 印하는 데 需用되는 종이의 製造는 活潑하였으나 佛經을 印하는 데 必要로 하는 印經紙의 製造는 高麗朝에 比하니 主要하지 않았으나 明으로부터의 要求에 依하여 造纸된 纸은 印經紙, 寫經紙, 佛經紙가 明에 貢하게 된 것이다. 그 紙質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11年(1411)8月15日 明使 黃儀이 寫經紙 一萬張을 求하였다.

世宗元年(1419)1月19日 明使가 印佛經紙 二萬張을 求하였다.

世宗元年(1419)9月18日 明使에게 印經紙 一萬張을 주었다.

等으로 보아 當時の 우리나라 製紙의 佛經紙가 質에 있어서 優秀하였기에 明으로부터 要求가 있었을 것이다. 明에 對한 主要한 貢物의 하나가 종이였음을 알 수 있다.

① 太宗實錄 卷22 太宗11年8月甲辰條

② 世宗實錄 卷3 世宗元年正月乙丑條

③ 世宗實錄 卷5 世宗元年9月庚申條

3) 製紙

李朝初期의 文化는 李朝時代에서도 加장 發達하였던 關係로 圖書의 出版을 為主로 하여 종이의 需用量은 激增하였으므로 종이의 大量生產을 目的하여 太宗15年(1415)7月25日 政府는 造纸所를 設置하였다. 그러나 造纸所에서 製造되는 數量으로는 全體 需要量을 基當할 수 없었다.

各道로 부터의 貢物中에서도 종이는 主要한 貢物이었으며 每年的 定期의 貢物以外에도 隨時로 必要한 數量을 各道에 制當하고 造纸進獻을 命하고 있다. 必要한 量이 大거나 또는 凶年인 때에는 造纸原料인 植物 甚之於는 各道의 國庫의 陳米豆를 使用토록 命하고 있다.

製紙法의 改良에 留意하여 世宗10年(1428)7月1일 日本으로 가는 通信使에게 倭紙造作의 法을 傳習하여 오도록 하였으며 製紙原料인 植物의 栽培를 改良코자 世宗12年(1430)8月29일에는 對馬島에 使者를 遣하여 倭楮를 求하여 오도록 하였다. 한편 倭紙의 製造法과 아울러 華紙의 製造法을 導入하였는데 太宗12年(1412)7月9일 遼人 申得財가 華紙를 造進하였기에 이를 質하고 紙工들로 하여금 傳習하도록 하여 申得財를 머물러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在來의 製紙法을 改良하는데 倭紙와 華紙의 製造法을 導入研究하고 參考하여 紙質向上에 努力하였던 것이다.

- ① 太宗實錄 卷30 太宗15年7月庚申條
 ② 太宗實錄 卷41 世宗10年7月辛亥條
 ③ " 卷49 世宗12年8月丁酉條
 ④ 太宗實錄 卷24 太宗12年7月壬辰條

第3節 鑄字所

鑄字所는 金屬活字를 鑄造하여 活字로서 書籍을 印刷하는 業務를 管掌하는 中央의 官署로서 지금의 美國 Government Printing Office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鑄字所는 太宗3年(1403)2月13日에 設置되었는데 鑄字所가 設置되기 以前에도 書籍院이 있어 書籍을 刊行하였는데 木板本의 印行에 不過하였다. 木活字로 印한 것 이 數種 있으나 大體로 木板本이고 書籍의 數交가 적고 또한 刊印하는데 너무나 많은 時間이 消費되어 個人이 所有하기는 품시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鑄字所의 設置와 活字印刷의 發展은 圖書文化發展에 한 紀元을 制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王이 銅鐵을 내고 大小臣僚들도 銅鐵을 獻納하여 經筵의 古註詩, 書, 左氏傳等의 宋版本을 字本으로 하여 太宗3年(1403) 鑄字所가 設置되면서 銅活字를 鑄造하였는데 太宗3年(1403)이 癸未年이어서 癸未字라고稱한다.

鑄字所가 設置되면서當時의 高位官吏로 는 藝文館의 大提學 李稷, 指制 閔無疾, 知申事 朴錫命, 右代言 李膺이 提調가 되었다.

世宗3年(1421)3月24日 世宗은 鑄字所에 酒 120瓶을 下賜하였는데 活字印刷法을 研究改良한 功役을 賞한 것이다. 前年인 世宗2年(1420) 元板本을 字本으로 하여 活字를 銅으로 改鑄하였는데 이것을 庚子字라고 한다. 以前에는 一日 數紙를 印함에 不過하였던 것이印刷法을 研究改良함으로서 1日數10紙를 印하게 되었다고 한다.

世宗16年(1434)7月2日 世宗은 知中樞院事 李稷에게 命하여 經筵所藏의 明初板本인 孝順事實, 爲善陰隲, 論語等의 圖書를 字本으로 하고 不足한 字는 晉陽大君 珠이 書하게 하여 20有萬字의 活字를 銅으로 鑄字케 하였는데 이活字를 甲寅字 또는 衛夫人字라고稱한다. 活字를 改鑄하면서 아울러 印刷法도 改良하였는데 하로에 40餘紙를 印刷하게 되어 前에 比하여 倍의 能率이 났고 字體와 印刷가 明正하였다고 한다.

世宗18年(1436)에는 首陽大君이 字本을 書하여 鉛으로 鑄造하였는데 이것을 丙辰字라고 한다.

世宗22年(1450)에는 安平大君 璿이 字本을 書하여 銅으로 活字를 鑄造하였는데 이것을 庚午字라고 한다.

以上述한바와 같이 太宗3年(1403)2月13日 鑄字所가 設置되면서부터 世宗32年 世宗이 升遐하기 까지의 48年間 癸未字, 庚子字, 甲寅字, 丙辰字, 庚午字의 五種의 活字가 이루어 졌으며 한글活字까지 合하면 더 많은 種의 活字가 鑄造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數次에 걸친 印刷術의 改良은 世宗의 圖書印刊에 對한 큰 著績이라 하겠다.

太宗3年(1403) 鑄字所가 設置되어서부터 7년이 지난 太宗10年(1410)2月7일에는 鑄字所로 하여금 書籍을 印하여 藏寶케 하였으나 世宗17年(1435)10月25일에는 각 道各官에게 性理大全과 四書五經大全等의 圖書를 鄉校에 印置케 하고 또 邑人으로서 自辦하여 이를 備置코자 願하는 者가 있으면 종이만 보내면 鑄字所所藏의 板으로 印하여 보내겠다고 諱하고 있다.

世宗은 鑄字所의 著務를 甚히 重하게 여기어 마침내 世宗17年(1435)9月12일에는

鑄字所를 景福宮內에 移置하였고 그間 諸
은 圖書를 印刷하여 여러 文臣들에게 이
를 下賜하였으나 文臣들의 圖書保管이 不
良함을 欲하고 이를 防止하기 爲하여 世
宗22年(1440)8月10日 各品에게 頒賜한 鑄
字所에서 印한 書籍을 3個月을 限하여 書
籍을 索하여 承政院에 내노아 宣賜이라고
하는 記錄을 白도록 特殊한 規程을 만드
렸던 것이다.

世宗32年(1450)까지 鑄字所에서 印刷
頒布한 圖書를 實錄에서 찾어 본다면 다
음과 같다.

太宗16年(1416)3月27日

乘船直指錄 300本을 印, 中外各道에 頒
世宗5年(1423)6月23日

老乞大, 朴遁事, 前後漢直解, 孝經

世宗5(1423)年8月2日

通鑑, 續編을 進, 文臣에 分賜

世宗6年(1424)1月11日

宋播芳各一部를 印, 文臣에 分賜

世宗6年(1424)2月14日

大成大學을 印, 50件을 文臣에 分賜

世宗7年(1425)11月8日

史記를 印, 文臣에 頒

世宗8年(1426)12月15日

新欽六典, 元六典, 800件을 印, 中外
各衙門에 頒

醫錄 百件을 印,

世宗9年(1427)3月23日

唐律疏義를 印, 中外官에 頒

世宗9年(1427)11月5日

綱目通鑑을 印

世宗10年(1428)9月8日

集成小學을 印

世宗10年(1428)11月12日

文章正宗, 楚辭를 印

世宗11年(1429)3月22日

句解孝經 250秩을 印

世宗13年(1431)1月21日

吏文謄錄을 印

世宗13年(1431)5月11日

直指方, 傷寒類書, 醫方集成, 各50部

를 印, 典醫監, 惠民局, 濟生院에 分給

世宗13年(1431)5月21日

東人之文, 益齋集을 印

世宗15年(1433)1月4日

經濟續六典을 印

世宗15年(1433)7月4日

癸丑陣說並陣圖를 印

世宗16年(1434)3月5日

胎產要錄을 印

世宗16年(1434)6月21日

老乞大, 朴遁事를 印, 承文院, 司譯
院에 頒

世宗16年(1434)7月16日

資治通鑑을 印

世宗17年(1435)4月8日

近思錄을 印

世宗18年(1436)1月29日

李白詩集을 印, 宗親, 五品以上의 文
臣에 頒

世宗18年(1436)4月4日

東國年代註解를 印

世宗18年(1436)7月29日

綱目通鑑訓義를 印

世宗20年(1438)11月30日

韓柳文의 註釋撰集을 印

世宗21年(1439)11月

諸家註解, 柳氏集을 印

世宗22年(1440)6月26日

國語를 印

世宗26年(1444)1月20日

量田算計法을 印

世宗26年(1444)7月1日

兵書 60件을 橫印, 平安, 咸吉兩道에
分送

① 太宗實錄 卷5 太宗8年2月庚申條

② 世宗實錄 卷11 世宗3年3月丙戌條

③ " 卷65 世宗16年7月丁丑條

④ 韓國史辭典 P351 鑄字

⑤ " " "

⑥ 太宗實錄 卷19 太宗10年2月甲申條

⑦ 世宗實錄 卷70 世宗17年10月癸亥條

⑧ 世宗實錄 卷69 世宗17年9月壬午條

⑨ " 卷90 世宗22年8月己卯條